

1. 개정이유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덤프트럭을”로 한다.

제124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의3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
3.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특수자동차
4. 법 제2조제13호 나목에 따른 덤프트럭

제124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 · 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보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 화 번 호 :)	

자동차 제원	회사명(제작업체)		사용 기어		
	차 명		변속기 제작업체 및 형식		
	차 량 형 식		출발 시 기어 단		
	공차 중량 (kg)		변속기 각단 기어비		
	엔진 제작업체 및 형식		사용 기어		
	엔진 아이들 회전수(rpm)		변속기 제작업체 및 형식		
	연료종류 및 탱크(L)		출발 시 기어 단		
	연료공급방식				
	연료분사방식	변속기 각단 기어비			
	엔진배기량(L)	종 감속비			
	최고출력(kW/rpm)		타이어 제작업체 및 형식		
	최대토크(Nm/rpm)		타이어 공기압 (kPa)	전륜	
				후륜	
타이어 반경(m)		타이어 관성(kg・m ²)			
측정 및 산정 시험결과	반적 중량(kg)				
	공회전 연료 소모율(kg/h)				
	공기저항계수(m ²)				
	연비(km/L)				
	온실가스 배출량 (g/km, g/km・ton)				

「대기 환경보전법」 제 76조의3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4조의3제 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기관 성적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1부. 2.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1부. 3. 자동차 외관사진 1부.	수수료 없음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적용대상) ----- ----- ----- -----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나목에 따른 덤프트럭을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생략)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자

	<u>동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u>
<u><신 설></u>	<u>2.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u>
<u><신 설></u>	<u>3.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특수자동차</u>
<u><신 설></u>	<u>4. 법 제2조제13호 나목에 따른 덤프트럭</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 ----- ----- ----- ----- ----- ----- ----- -----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